



공고 제2024-516호

2024년 「중소기업 제품 디자인 및 마케팅 지원사업」 참여기업 모집 공고

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중소기업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『2024년 「중소기업 제품 디자인 및 마케팅 지원사업」』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. 2. 29.

경기도지사

1 사업 개요

□ 사업목적

- 디자인개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신제품 및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촉진을 통한 매출 증대

□ 지원내용

- **(디자인개발)** 디자인 전문회사(대학)를 활용하여 제품, 시각, 포장 디자인 개발지원

□ 지원대상

- **(디자인개발)** 신청일 기준 23개 참여시군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

※ 제품디자인의 경우 공장등록기업에 한하여 지원

[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] (건축물대장 제출)

- "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"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, 건축물 대장상 사업장 면적이 500㎡미만(종업원 50인 미만)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근린생활시설 중 “제조업소(시설)” 인 기업

[공장등록 인정가능 시설 및 요건](입주기업 확인서, 입주계약서 사본 등 제출)

- 창업보육센터, 벤처집적시설 내 입주기업
- 경기창업벤처센터 내 입주기업
- 기타 제조시설 확인자료(직접생산확인증 등) 제출이 가능한 경우

▶ **참여가능 시군 [23개 시군]**

- 동부권(6) : 용인, 광주, 하남, 이천, 양평, 여주
 - 서부권(6) : 부천, 시흥, 광명, 군포, 의왕, 안양
 - 남부권(5) : 수원, 화성, 평택, 오산, 안성
 - 북부권(6) : 고양, 남양주, 파주, 양주, 구리, 포천
- **공장소재지 기준으로 참여가능하며, 공장소재지가 미참여시군인 경우에 한하여 본사소재지로 신청가능**
 <예시>

구분	본사 소재지	공장 소재지	신청가능 지역
시군	이천	광주	광주 (공장 기준)
	시흥	안산 (미 참여)	시흥 (본사 기준)

- **공장미등록기업은 본사소재지로 신청가능(시각·포장디자인 분야에 한함)**
 ※ 시각포장디자인 분야에 한해, 해당시군 공장등록 기업일 경우 가점 부여 (공장등록 증명서류 제출기업에 한함)

□ **주관기관 [디자인수행업체]**

- 1차 서류평가 통과 기업에 한해 신청기업이 주관기관을 선정
 ※ 과업 및 최종결과물, 비용 등 충분한 협의 후 선정, 최종선정 이후 주관기관 변경 불가
- 주관기관은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등록된 전국 디자인 전문회사 또는 디자인 및 관련학과가 설치된 경기도 소재 대학(교)
 - 디자인전문회사 전문분야와 지원신청 분야가 동일해야하며, 경기도 소재 디자인전문회사의 경우 가점우대

□ **신청제외 기업**

- 세금체납액이 있거나 완전자본잠식(2개년 이상), 기업 신용도 조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
- 정부출연금 및 타 지원사업에서 지원받은 과제 또는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
- 전년도 디자인개발지원사업에 지원받은 경우
- 당해연도 도내 타 유사사업에 참여하는 기업
- 접수된 과제가 이미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경우
- 기타 동 사업 관리지침에 명시된 지원제외 대상에 속하는 경우

2 지원분야

□ **지원분야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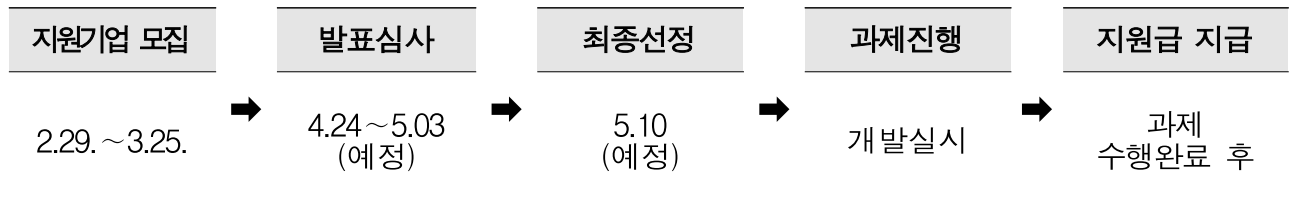
구분	내용	지원한도액	규모(社)	기업부담	비고
디자인 개발	· 디자인 전문회사(도내 대학)을 활용하여 제품 또는 시각·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	시각/포장 700만원, 제품 1,400만원 이내	152	30%	

- 디자인 전문회사(도내 대학)을 활용하여 제품디자인(기업당 최대1,400만원) 시각/포장 디자인(기업당 최대 700만원) 지원 ※총 개발비용의 70% 이내 지원

구분	제품디자인	시각/포장 디자인
지원한도(70%)*	14백만원 이내	7백만원 이내
기업부담(30%)	6백만원	3백만원
합계(100%)	20백만원	10백만원

- 시각디자인 분야 : CI, BI
- 포장디자인 분야 : 박스 및 표면디자인, 라벨디자인, 용기디자인
- 제품디자인 분야 : 대량생산을 전제로 한 각종 제품디자인
ex) 전기.전자, 정보통신기기 디자인/ 생활용품, 레포트 및 의료기기 디자인 등

□ 지원절차



* 상기일정은 지원기업 규모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음.

- ▶ 모집기간 신청접수 후 1차 서류평가결과 60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2차 선정평가위원회(발표심사) 상정
 - 개최일정 : 2024 4. 24(수) ~ 5. 03(금), 비대면 심사 예정

□ 유의사항

- 명확한 지원분야 및 소요비용 확정 (제품, 시각/포장 중 한 개 선택)
 -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은 총 사업비의 70%에서 지원가능
(B사 제품디자인개발 용역금액이 20백만원(VAT제외) 일 때 14백만원 지원)
 - 최종평가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및 예산상황에 따라 최종 디자인분야 및 금액이 일부조정 될 수 있음
- 총개발비용에서 지원결정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기업부담
- 지원결정금액은 부가가치세(VAT)를 제외하며 부가가치세(VAT)는 기업부담
- 과업 범위
 - 제품디자인의 경우 최종결과물로 1:1 Mock-up 개발 필수
; Scale(축소) Mock-up 개발 시 참여기업과 주관기관 협의 및 심사자료에 **必** 명시
 - 포장디자인의 경우 제작시방서, 패키지 샘플 제작 필수
 - 시각디자인의 경우, 매뉴얼북 제작 필수
- 기타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별첨. 「디자인개발지원 관리지침」 참고

3

주관기관 확인방법

- 1차 서류평가 통과 기업에 한해 신청기업이 주관기관을 선정
 - 한국디자인진흥원 등록 디자인 전문회사 조회 (designfirm.kidp.or.kr)
 -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신청기업에 주관기관(디자인전문회사) 추천은 별도로 하지 않음

4

신청방법

- **[접수기간] 2024. 2. 29.(목) ~ 2024. 3. 25.(월) 17시 까지**
 - ※ 마감일에는 접속자 수가 많아 서버접속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요청 드리며, 마감시간 이후 접수분은 인정불가
 - ※ 신청현황에 따라 모집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
- **[신청방법] 이지비즈 (www.egbiz.or.kr) 온라인 신청 및 제출서류 업로드**

-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/로그인
- ② (상단) 마이페이지 클릭 ⇒ 나의 서류함 클릭 ⇒ 하기 제출서류 보유 시 (하단) 등록하기 클릭 ⇒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
 - ※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하시면 향후 계속하여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.
- ③ (상단 좌측) egbiz 로고 클릭 후 초기화면에서 ⇒ ‘기술개발/사업화’ 카테 고리에서 “2024년 중소기업 제품 디자인 및 마케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” 클릭 ⇒ (하단) 지원사업 신청하기 ⇒ 신청서 작성
- ④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

- ※ 신청서 및 제출자료 수정은 접수기간 마감전까지 마이페이지-나의참여사업-참여사업 진행현황-(하단)신청서 수정 클릭하여 수정가능

5

제출서류

필수서류	선택서류(해당 시 제출)
① 디자인개발지원신청서 (서식 1)	⑧ 경기도유망중소기업
② 사업자등록증명원 (국세청)	⑨ 벤처기업
③ 공장등록증명원 (제품디자인개발 신청시)	⑩ 경기일자리우수기업
④ 2022년 재무제표	⑪ 이노비즈
⑤ 국세 납세증명서	⑫ 수출유망중소기업
⑥ 지방세 납세증명서	⑬ 사회적기업
⑦ 고용보험가입자명부	⑭ 여성기업
	⑮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
	⑯ 면접수당 지급기업 인증서
	⑰ ESG진단평가 우수기업
	⑱ 가족친화기업 일자리 좋은 인증기업
	⑲ 산업재산권(특허, 디자인, 상표)

※발급방법 등은 공고문 붙임의 「디자인개발지원」 제출서류 리스트 참조

6

문의처

○ 사업내용 및 신청 방법 등 문의

신청지역	담당부서	담당자	연락처
용인, 광주, 하남, 이천, 양평, 여주	동부권역센터	이지호 과장	031-830-8567
		박정은 대리	031-830-8563
부천, 시흥, 광명, 군포, 의왕, 안양	서부권역센터	조수만 차장	070-7116-4811
수원, 화성, 평택, 오산, 안성	남부권역센터	이현표 차장	031-672-3590
고양, 남양주, 파주, 양주, 구리, 포천	북부권역센터	서일교 과장	031-850-7123

○ 이지비즈 홈페이지 관련 문의 (온라인 신청, 파일업로드 오류 등)

-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산운영실 (Tel. 031-259-6299)

7

위법·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

- 위법·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[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]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.
 - 위법·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
 - 형사고발(문서의 위·변조, 사기, 업무방해, 금품·향응제공 등 위법·부당행위 수반 시)
 - 향후 지원배제(금액과 횟수,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)
 -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(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)